제319회 ●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6. 2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】

의안번호 860

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안 자 : 이영실 의원외 39명

나. 제 안 일 : 2023. 5. 30.

다. 회 부 일 : 2023. 6. 5.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 가. 제안이유

 최근 공공기관 및 시설 내 아이들의 안전한 체험과 성장을 위한 공공키즈카페나 돌봄 공간이 확대 설치되고 있는 바,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원활히 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○ 제15조 제4호에 돌봄공간의 확충 규정을 신설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입법예고 (2023.6.8~6.12.) 결과 : 의견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#### 1 조례안의 개요

 본 개정안은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도로,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 성사업 추진 시 아동을 고려한 돌봄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 록 하는 내용임.

## 2 주요사항 검토

본 개정안은 도로, 교통,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함에 있어 아동의 돌봄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	제15조(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
조성) 시장은 도로, 교통, 공원	조성)
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	
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	
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	
노력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4. 돌봄공간의 확충</u>

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(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: CRC)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, 보호권, 발달권,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(4대 권리)를 실현함으로써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함.

#### UN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권1)

- · 생존권: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,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,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,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
- · 보호권: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, 차별, 폭력, 고문, 징집, 부당한 형사 처벌, 과도한 노동,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- · 발달권: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. 교육 받을 권리, 여가를 즐길 권리,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,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
- · 참여권: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 야 하며,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. 표현의 자유, 양심과 종교의 자유, 의견을 말할 권리,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,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,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
  -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<sup>2)</sup>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아동결핍 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취미, 여가활동 등 성장과정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음.

<sup>1)</sup> 아동권리보장원, UN아동권리협약

<sup>2)</sup> 보건복지부(2019),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

- 본 개정안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 정서적·인지적 발달을 도모하고 UN아동권리협약의 '아동보호권'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 조성 시 돌봄공간 확층 노력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서울특별시는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
  및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에 따라 자치구와 협력하여 아동의 돌봄 지원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, 지원하고 있음.
- '23.5월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내 260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설치 또는 운영 중이며 76개소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설치 또는 운영 중임.
-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는 각각 400개소 설치·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인구밀집도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의 특성 상 적합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시설 조성 시 아동 돌봄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다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 수가 2000년 12,077천명에서 2022년 7,256천명<sup>3)</sup>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돌봄공간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하겠음.

<sup>3)</sup>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(2020년 기준)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 조성 시 돌 봄공간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이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.

문 의 처

김종훈 입법조사관 (02-2180-8148)